



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
정치법제위원회 / 발의자: 이민지



목차

- 1 현 직장내 성희롱 실태
- 2 법안 개정 취지
- 3 입법청원안 소개
- 4 기대효과



최회장(63)이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



청담동 한 호텔에서 최 회장과 밥을 먹었는데, 최 회장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어요.



A씨가 어지럽다고 해 호텔을
잡아주려고 했을 뿐이
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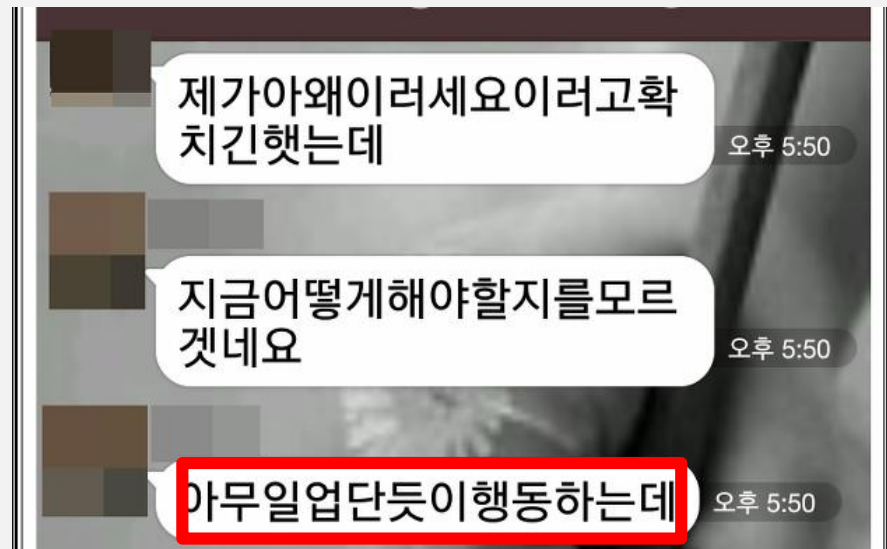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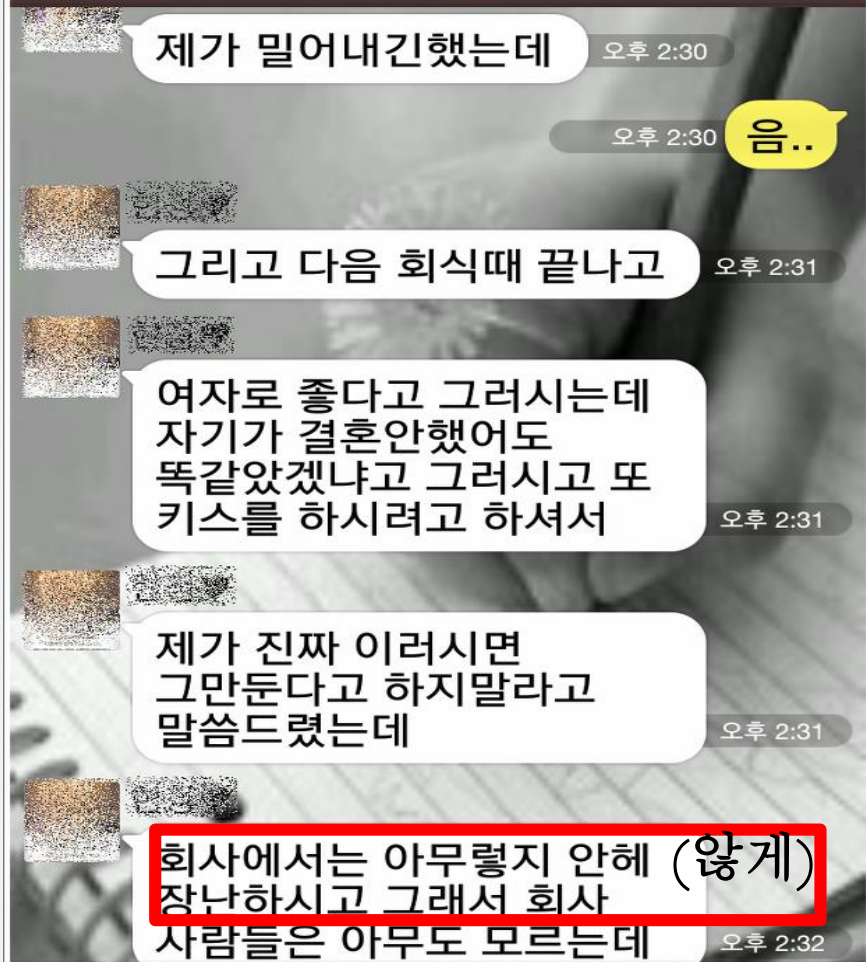
01

현 직장내
성희롱 실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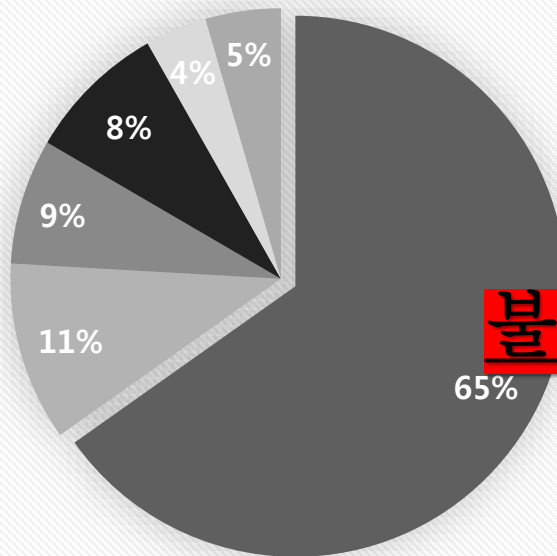


78.4% "직장 내 성희롱 경험했다."

출처: 여성가족부 <2015년 성희롱 실태조사>



가해/피해자의 관계



요구 불응 시
불이익 협박 받음

- 직장 내 상하관계
- 직장 내 동료관계
- 거래 이용 관계
- 교육 관계
- 기타
- 공권력 강제 수용관계

02

개정취지

02 개정 취지

피해를 입었을 때 적절한 조치(신고 등)를 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
직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해
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함

03

입법청원안 소개

현행법

제5조(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)

① 근로자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
남녀가 동등하게 존중 받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
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의
실현에 방해가 되는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여
남녀근로자가 동등한 여건에서
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
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사업주는 일·가정의 양립을 방해하는
사업장 내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
일·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
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신설

④ 사업주는
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
성범죄 문제에 대하여
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
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.

I.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.
가. 위원회 구성은 남녀 성비를 동등하게 한다.
나. 위원회는 총 8명으로 구성한다.
다. 이외의 위원회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현행법

제25조(분쟁의 자율적 해결)
사업주는 제7조부터 제13조까지,
제13조의2, 제14조, 제14조의2,
제18조제4항, 제18조의2, 제19조,
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6까지,
제21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
근로자가 고충을 신고하였을 때에는
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
해당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에
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자율적인 해결을 위
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7.12.21.]

신설

제25조(분쟁의 자율적 해결)
사업주는 제7조부터 제13조까지,
제13조의2, 제14조, 제14조의2,
제18조제4항, 제18조의2, 제19조,
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6까지,
제21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
근로자가 고충을 신고하였을 때에는
경찰에게 수사권을 전적으로 일임한다.

현행법

제37조(벌칙)

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<개정 2012.2.1.>

2.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

신설

제37조(벌칙)-추가

⑤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.

⑥ 사업주가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도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.

현행법

전문개정 2007.12.21.

제39조(과태료)


①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
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
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
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<개정 2012.2.1.>

I.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
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도
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나
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

신설

삭제



04

기대효과

구제절차 강화

2차 피해를 예방하고 사건에 대한 이해를 확고히 한다.

성희롱 예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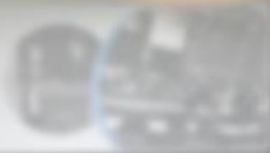
성희롱 위반 관계자에 대한 통합적인 제재가 가능함으로써 성희롱의 예방

정당한 노동권 향유

강자 위주의 경험, 인식을 기준으로 이뤄졌던 법의 적용 과정에 대한 반성 및 약자 관점에서의 절차 시행을 기대.

대한민국헌정회
대한정치학회
대한법학회

제 15회 정기회의 & 청소년국회



감사합니다